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0-22호

「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8월 19일

상 주 시 의 회 의



「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」 예고

1. 제정이유

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,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제1조 및 제2조)
- 나.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3조 및 제4조)
- 다.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)
- 라.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(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oym9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